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1. 수출자(이름, 주소, 국가)			2. 증명서 번호	
3. 수입자(이름, 전체 주소, 국가)			4. 원산지 국가	
5. 선적항 및 운송 세부사항(선택사항)			6. 목적지 국가	
7. 비고			8. 상업 송장	
9. 물품명세				
번호	관세 품목 번호	물품명세	원산지 기준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단위
원산지 증명				
10. 다음에 의한 신고: ☐ 생산자 ☐ 수출자(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래의 서명자는 이 증명서 기입을 위한 설명을 읽었으며, 상품이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날짜: _____ 서명 _____			11. 발급 당국에 의한 증명: 이 증명서의 진정성 및 이 증명서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증명합니 다. 날짜: _____ 관인 및 서명 _____	

원산지 증명서 -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추가 면)				
증명서 번호:				
9. 물품명세				
번호	관세 품목 번호	물품명세	원산지 기준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단위
원산지 증명				
10. 다음에 의한 신고: ☐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래의 서명자는 이 증명서 기입을 위한 설명을 읽었으며, 상품이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날짜: 서명		11. 발급 당국에 의한 증명: 이 증명서의 진정성 및 이 증명서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증명합니 다. 날짜: 관인 및 서명		

한국-이스라엘 원산지 증명서 기입 방식에 대한 설명

아래의 설명은 전자 및 종이 원산지 증명서 모두에 적용된다.

제1란- “수출자”

이 난에는 수출자의 세부사항, 수출자의 이름 및 수출국에서의 주소를 기재한다.

제2란- “증명서 번호”

이 난은 수출국 용도로서, 수출국은 증명서 번호를 기입한다.

제3란- “수입자”

이 난에는 최종 목적지 국가의 상품 수입자의 세부사항을 기재한다. 상업적인 이유로 수입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자는 이 난에 “미상”이라고 기입한다.

제4란- “원산지 국가”

이 난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

제5란- “선적항 및 운송 세부사항” (선택사항)

이 난에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선적항을 기재한다.

제6란- “목적지 국가”

이 난에는 상품의 최종 목적지인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

제7란- “비고”

이 난에는 수출국의 비고, 예를 들어 “제2사본”, “소급발급”, “역외가공”에 대한 언급, 생산 지역(장소 및 우편번호¹)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제8란- “상업 송장”

이 난에는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송장의 번호를 기재한다. 상업적인 이유로 송장의 번호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자는 이 난에 “미상”이라고 기입한다.

¹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

제9란- “물품명세”

이 난에는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번호”라고 명명된 난에는 상품의 연번(색인)이 기재될 것이다.

“관세 품목 번호” 라고 명명된 난에는 HS 코드가 6단위로 기입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및/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 제3.3조의 의미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가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PSR”
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PE”
라.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기초하여 합의된대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OP”

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원산지 기준과 실제 원산지 기준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증명서가 무효화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에 대한 난에는 총 중량 또는 상품의 그 밖의 모든 수량 단위를 상세히 기술한다.

*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HS 코드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실제 품목분류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증명서가 무효화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10란-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적절한 난에 자신이 생산자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수출자가 또한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 난에 표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자”란에 표시한다.

제11란- “증명”

이 난에는 증명기관의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관이 서명하고 인장을 찍는다.